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신설 >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7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제220957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신설(안 제50조제7항 등)	2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220957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
3. 회 부 일 : 2025. 4.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등).

Ⅲ. 검토의견

1.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신설(안 제50조제7항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자체가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전기 충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전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⑥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 ----- -----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 -----전기 또는 수소(이하 “수소등”이라 한다)----- ----- ----- -----.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	제51조의4(수소등 연료보조금의 지급

현행	개정안
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u>수소</u>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u>수소 연료보조금</u>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u>수소</u> 사용분에 대하여 <u>수소 연료보조금</u>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u>수소와</u>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u>수소 연료보조금</u>을 지급받은 경우 4. <u>수소 연료보조금</u>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정지) ① ----- ----- ----- ----- ----- -----<u>수소등</u>----- -----. 1. -----<u>수소등</u> -----<u>수소등</u>----- ----- -- 2. ----- -----<u>수소등</u>----- -----<u>수소등 연료보조금</u>----- ----- 3. -----<u>수소등과</u>----- -----<u>수소등</u>----- 4. <u>수소등</u>----- ----- ----- ----- ----- 5. (현행과 같음) ②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현행	개정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u>수소</u>에 대하여 <u>수소</u>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u>수소</u>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 8. (생략) ② · ③ (생략)	에 관한 법률」----- ----- ----- ----- -----수소등에 대하여 <u>수소등</u>----- -----.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수소등----- ----- -----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유류(경유, LPG), 천연가스, 수소 등 연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기 연료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제도 】

구분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	대상	도입시기	근거
유가보조금	영세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류(경유·LPG)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노선버스, 택시	2001.7.	현행법 제50조 제5항 ¹⁾
천연가스(CNG) 연료보조금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CNG)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노선버스, 전세버스	2017.7.	같은 조 제6항 ²⁾
수소 연료보조금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운행에 소요되는 수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2021.9.	같은 조 제7항 ³⁾

자료 : 국토교통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지급 규모(2023년·2024년) 】

(단위 : 억원)

연도	버스					택시			
	계	경유	LPG	CNG	수소	계	경유	LPG	수소
2023	1,671.57	992.27	0.05	620.16	59.09	2,110.09	4.43	2,105.66	-
2024	1,858.50	1118.19	0.25	587.94	152.12	2,164.13	4.35	2,157.83	1.95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전기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자동차도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기만 제외되어 있는 연료비 지원 대상에 전기도 포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의 사업용 보급을 촉진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영세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⁴⁾, 천연가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도입 확대를 위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은 환경친화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에 상대적으로 비싼 수소 연료비가 장애 요인이 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각 연료의 종류별 도입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전기 연료보조금 지급이 전기차 보급 촉진이라는 개정안의 목적 달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 연료비가 유류·천연가스·수소 등 다른 연료비의 40~60% 수준으로, 현행 연료보조금을 반영한 실부담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가장 저렴하다는 점과 환경친화적 사업용 자동차 중 수소자동차와 비교하여 연료비 지원이 없는 전기자동차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 버스·택시의 Km당 연료비용 (2025년 6월 기준) 】

구분	버 스		택 시	
	보조금 지급 전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 지급 전	보조금 지급 후
CNG	538.88원/km	505.74원/km	-	-
LPG	-	-	113.11원/km	95.17원/km
경유	512.05원/km	412.31원/km	114.92원/km	94.57원/km
수소	601.82원/km	307.71원/km	106.35원/km	67.89원/km
전기	272.61원/km		57.96원/km	

자료 : 국토교통부

- 4) 경유, LPG 등 세율이 2차레('01, '05)에 걸쳐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운송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 당초 '01.7월부터 '08.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운수업계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장 시행 중임.

【 연료별 버스 구성 현황 】

(단위:대)

연도	계	경유	CNG	전기	수소
2021	85,826	56,883	26,563	2,276	104
2024	84,294	52,378	21,689	8,709	1,518

자료 : 국토교통부(버스·전세버스연합회, 고속버스 조합을 통해 수집한 자료)

【 연료별 택시 구성 현황 】

(단위:대)

연도	계	LPG	CNG	휘발유	경유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2021	240,236	232,082	226	239	495	6,450	64	680
2024	233,440	194,810	-	481	306	35,615	76	2,152

자료 : 국토교통부(지자체 취합)

한편, 현재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뿐 아니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가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⁵⁾,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전기 연료보조금 신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와도 연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 의견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 연료보조금 신설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수소 연료보조금 도입 취지 및 최근 전기 충전금액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